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7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김정호·서삼석·김철민

임종성 · 김경협 · 김윤덕

강훈식 · 신동근 · 주철현

김병욱 · 신정훈 · 임호선

유준병 • 권칠승 • 유후덕

김교흥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육성을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퍼센트로 늘리기로 함에따라 수상, 산지, 임야 등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가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 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태양광 폐기물의 처리 방법·절차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여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 (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 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태양에너지를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그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폐기 등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관리계획의 내용 및 시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